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2권 제4호(통권 제88호, 2011 · 겨울호)

국내외 투자사기의 유형별 실태 연구

박정선* · 황지태** · 양승돈***

국 | 문 | 요 | 약

투자사기와 그로 인한 피해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까지 개입되는 탓에 투자사기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정도로 복잡다단해졌다. 연령, 수입, 학력, 지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투자사기 범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 세련된 매너, 친밀한 목소리,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대화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서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이는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인 성공이 삶의 최고목표가 되어버린 문화적 풍토에서 작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사기 중에서도 특히 현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나이지리아 선급금사기, 폰지사기, 펌프앤덤프사기, 해외투자사기, 프라임은행 등 주요 투자관련 사기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거래의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유형화된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언론자료에 주로 근거한 탐색적 수준의 실증연구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관련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향후 추가적인 심층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투자사기, 금융사기, 유사수신, 경제범죄, 폰지사기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정보화시대의 급속한 진행은 그에 따른 범죄형태의 다양성을 창출해 내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범죄의 양상은 어느 특정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되고 있다. 특히 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투자사기는 더 이상 국내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른 내국인의 국제적 투자사기 범죄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유관기관에서는 국내외 투자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그 위험과 충격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던 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그 범죄 양상은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어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정부의 수준에서도 거래(transaction)의 진위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가 어렵고 유동자금이 돌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근신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지만 경기가 회복 되고 투자가 활성화 되면 이 틈을 이용하여 각종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러한 투자사기는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엔론(Enron),[1] 타이코(Tyco)와 같은 기업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투자사기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거래의 실태 및 유형을 살펴보며, 유형화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1) 2001년 당시 미국 기업순위 7위에 기록되었던 엔론(Enron)의 경우 2001년에 파산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엔론(Enron)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휴지조각이 된 주식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II. 투자사기의 정의와 유형 분류

1. 투자사기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기범죄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재물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혜택을 준다고 고의로 속임으로써 실재하지도 않은 또는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기란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범죄들 가운데 소위 투자사기라는 형태의 보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다. 투자사기는 장래에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자본 등을 제공하였으나 기망당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나 미래의 불확실한 부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부를 희생시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시간적 위험에 대한 보상)와 위험 프리미엄(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정성, 수익성, 환급성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였으나 기망을 당하여 금원 등을 편취당하는 것이다. 그 영역도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피해계층도 전문가나 상류층뿐만 아니라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이면에는 정상적인 투자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보다 터무니없는 고수익에 현혹되어 투자하다가 결국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2. 투자사기의 원인

투자사기 원인에 대한 심층탐구가 본고의 본격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대신 본고는 일차적으로 투자사기 범죄의 유형별 발생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투자사기의 원인에 관한 논의는 간략한 수준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적 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구조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및 기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는 정보화 사회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정보화의 진행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급속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잠재적 범죄자들은 정보화 사회의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 약점을 찾아간다. 또한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몇몇 아프리카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적절한 경제운용은 국민들의 투자욕구를 비정상적인 곳에서 해소시키게 몰아갈 수도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태도, 생활양식이 범죄지향적인 가치를 심어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명예와 신념을 중시하던 문화에서 경제적 성공을 중시하는 가치지향의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허구적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더욱 중시하게 하였다. 더구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경쟁자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해 한탕주의적 도약에 천착하게 한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투자사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기회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 풍토변화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 가해자요 잠재적 피해자화 되고 기본적인 가해자-피해자 풀(pool)이 성장함에 따라 양자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세계가 전개됨에 따라 익명의 다수가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상태에서 무방비상태의 초보자들을 맘대로 유린할 수 있는 기회가 도처에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투자사기의 요인을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이다(Merton, 1938). 문화적인 목표(cultural goal)와 제도화된 수단(institutionalized means)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집합적 수준의 아노미는 부에 대한 개인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몰아버리는 주범이 된다. 학습이론적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중요한 타자들 특히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같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인물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투자사기에로의 잠재적 가해자 및 피해자로 성장해 나아간다. 이러한 가치와 태도의 형성은 주변사람들 특히 투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투자 및 경제활동에 더 우호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투자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더욱 많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동일하다고 볼 때에는 분명 우호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 더욱 많은 투자를 고려하게 되고 이에 따른 위험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3. 투자사기의 유형

투자사기의 유형분류는 미국의 인터넷 사기 관련 법률단체에서의 분류법을 참고하기는 하였으나[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그 기준은 주로 투자 상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범행수법상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뒤에서 이와는 다른 기준으로 범행수법을 분류한 것과는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1)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

나이지리아 사기는 일종의 선급금 사기이다. 각종 서류 등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위조하는 등, 막연한 신용을 이용한 속임수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큰 이익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고 수수료, 소개비, 인지대 등 선급금 등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이다[3]. 주로 이메일,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NS), 우편 등을 이용하여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 고위관리의 비자금, 상속인이 없는 거액유산, 휴면예금 등의 제공을 미끼로 유인하고 대통령실, 중앙은행, 재무부, 석유공사의 기관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 정부 고위관료 등을 사칭하고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사취하는 것이다. 또한 걸려든 상대방에게 불법임을 강조하여 극도의 신뢰와 보안유지를 당부하며 실명계좌 통보를 요청한다(KOTRA, 2005: 7-10). 지능적 선불사기는 신뢰획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물량의 수입 오더를 제안하거나 거액

2) http://www.spamlaw.com/internet-fraud-stats.html

3) 소위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 419조에서 사기죄로 규정된 것에 유래하였으나 스페인 죄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프리카 내에서는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 세네갈 등이 요주의국가가 되었고 아프리카 밖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요주의 국가였다.

의 커미션을 제의하여 현혹하고 완벽에 가까운 문서위조를 하면서 속칭 '대포 폰'을 사용하여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유형으로는 팩스·편지·e메일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비자금·거액유산·휴면예금 이체사기, '블랙 달러 사기'라 부르는 염색미화 이용사기, 실재 존재하는 외국복권회사의 에이전트를 가장하여 당첨금을 구실로 가입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외국 로또복권 당첨미끼사기, 위조 외국채권·증명서 이용·모조미화 이용사기, 외국은행 자금의 대출과 국내 투자 유치 사기, 입찰 수주·무역거래 이용사기 등이 있다(국가정보원, 2006: 43-52).

2) 폰지사기

폰지사기 혹은 폰지책략(Ponzi Scheme)은 일종의 사기성 투자 작전으로 다수의 개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그 배당금이 해당 조직의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투자금이거나 또 다른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충당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4]. 이 수법의 대강은 이렇다. 먼저 자칭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준다. 그리고 이들은 명성을 믿고 무조건 신뢰하게끔 과감하게 금융권과 언론 등을 이용하여 진실인양 믿게 만들어 고수익을 찾아 헤매는 부유한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도 속일 수 있다. 지속적인 수익률을 과시하고 리스크(risk)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환경은 급변하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고 선전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나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폰지 회사의 회계자료는 조작되고 감사는 부실한 특징이 있다. 폰지책략은 다른 투자기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배당금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 배당금은 의외로 기대수

4)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폰지책략의 변형으로 피라미드 책략, 거품, 돌려막기가 있다. 피라미드 책략은 고도의 수익을 기대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재정적 허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많은 의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폰지책략과 유사한 형태이다. 거품은 신규 참여자가 후발 참여자의 가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폰지책략과 유사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돌려막기는 가령 "폴에게 지불하기 위해 피터를 강탈한다"는 식이다. 채무기간은 만료되었는데 빚을 갚을 돈이 모자란다면 채무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훔쳐서라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폰지책략과 차별화된다.

익보다 높거나 지속적이어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폰지 책략이 광고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책략이 지속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의 대부분은 기존의 투자자 및 신규투자자들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나 폰지시스템은 종국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양이 얼마이든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의 규모는 배당금의 규모보다는 작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폰지책략은 자체적으로 붕괴되기 전에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폰지 기획자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피해유형으로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는 금융다단계 투자사기를 비롯하여 주식·펀드투자를 가장한 피라미드, 부동산투자를 가장한 폰지책략, 수익사업 빙자 폰지책략, 제품판매 빙자 피라미드 등이 있다.

3) 펌프덤프책략

펌프덤프(Pump and Dump) 책략은 값싸게 주문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팔기 위해 거짓이나 호도된 긍정적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이다. 헐값에 매입한 주식을 허위 정보 등으로 폭등시킨 뒤 팔아치우는 펌프앤덤프는 허위 주식정보 등을 유포해 헐값에 산 주가를 높인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긴다. 펌프덤프 책략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chop stocks”이라 한다. 예전에는 소위 “보일러룸(boiler room)”이라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전화권유영업에 의존하였으나 인터넷이 발달하자 스팸메일[5]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 내용 중에 긴급뉴스에 대한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미끼를 놓는다. 편파적이지 않은 추천정보를 흘리는 뉴스문자, 채팅방이나 스팸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메시지들은 모두 특정 주식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 재빨리 그 주식을 구매하라는 주문들이다. 소문이 떠도는 주식은 곧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다. 이들은

5) IT 전문탐지업체인 소포스에 의하면 독일에서 첫 펌프앤덤프가 탐지된 이후 전세계 스팸메일에서 펌프 앤드 덤프 케이스가 지난 2005년 1월 0.8%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25% 가량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2007년 8월 9일 기사 (http://busines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9/2007080900877.html)

소위 “페니스탁(penny stocks)”이라고 알려진 값싸고 거래가 흔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활용한다. 특정 회사에 대한 가용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믿을 만하지 못해야 주가를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욱 지능화되어 작전세력들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트위터를 이용하거나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한다.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을 매수해 허위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주식을 부풀리기도 한다. 피해유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펌프 앤 덤프 사기 유형인 작전(현실거래·루머·행동)에 의한 시세조정을 비롯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회사제품 과장광고 후 주가폭등, 인터넷 고수익 투자프로그램(HYIPs : high-yield investment programs)을 통한 사기적 판매행위, 증권사기 부풀리기(Touting)가 있다. 펌프덤프 스팸메일의 발원지를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4) 집단투자사기 : 뮤추얼펀드, 기획부동산

집단투자책략[6]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실현가능하지 않을 때 보다 넓은 범위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돈을 모아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집단투자를 위주로 발달해 왔고 이러한 것들이 주요 증권 거래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부동산 신탁[7]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높은 가치를 가진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와 매매에 있어 일부 개인이나 법인과 같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만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많은 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마치 주식을 투자하듯 부동산과 관련된 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부동산투자는 REIT(리츠)회사의 투자[8],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및 부동산펀드로 대별할 수 있다[9]. 기획부동산은 법적·학문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6) 종종 뮤추얼펀드, 투자펀드, 관리펀드, 또는 단순히 펀드(뮤추얼펀드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함)를 지칭한다.

7) http://blog.naver.com/eyeos?Redirect=Log&logNo=19123224

8) 부동산 투자신탁(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을 전문인력을 통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부동산 중개업·개발업·매매업 등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주로 중개업의 성격이 강하여 일종의 유사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 영업형태로 볼 수 있다. 유사부동산 중개는 외형적으로는 부동산중개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중개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현재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유통의 양상은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인 경우가 많다(소비자 보호원, 2006: 4-6).

5) 프라임은행[10)]

프라임뱅크 프로그램[11)]은 은행의 이름을 담보로 투자자들의 펀드를 이용하여 속이는 수법이다. 이들은 보통 투자자가 지불한 펀드가 “프라임은행”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의 은밀한 재무수단을 구매하고 유통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올려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재정적 수단은 물론 그들이 그 수단을 유통시킨다

9) 부동산투자신탁은 운영의 주체에 따라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뉘기도 한다. 전자가 부동산투자법에 따른 별도의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여신업무가 주가 되는 은행에서 신탁업무를 통해 부동산신탁과 같은 금전신탁상품의 한 종류로 운영하는 것이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나 전자의 장점은 투자주체의 안정성과 책임성, 유동성과 환금성, 주주권한 등이고, 후자의 장점은 넓은 선택의 폭, 거래의 투명성, 명확한 배분 등이 있다. (http://blog.naver.com/dhouo?Redirect=Log&logNo=30009273142)

10) http://www.sec.gov/divisions/enforce/primebank/howtheywork.shtml

11) 미국에서 프라임 은행 사기대출은 개인과 관계기관 등에게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야기하여 미국경제를 공황사태로 이끄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프라임(prime)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이하는 정상적인 대출이나 서브프라임(sub-prime)은 말 그대로 프라임 대출보다 하위의 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0%를 넘는다. 문제는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액이 크므로 그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져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MBS(Mortgage-Backed Securities·주택저당증권)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저당 잡은 권리(저당권)를 기반으로 다시 여러 금융 기관으로 분산해 판매한다. 이런 MBS를 산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등 다른 채권들과 섞어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부채담보부증권)를 만들어 다시 판매하여 CDO에 들어 있는 각종 채권이 어디서 왔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실채권과 우량채권 등을 섞어서 판매하고 여러 수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고,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좋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담보물이 부실화되고 여기서 파생된 상품들 모두 부실화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생긴 주택담보대출 부실은 투자은행을 파산시킨다. 투자은행의 파산은 보험, 증권, 상업은행 등 연계되어 있는 전체 금융기관으로 퍼져 결국 금융 전체가 무너져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고 하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략이 마치 합법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획자들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유통시킨다. 판매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마치 월스트리트나 런던, 제네바 혹은 다른 세계적인 재정센터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무기관 종사자들에게만 보장된 프로그램에 특별히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유혹한다. 투자자들은 또한 위험부담은 전혀 없이 100% 혹은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12]. 사기대상으로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 및 다른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다. 이 책략의 중개인은 놀랄 정도의 뻔뻔함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USA today나 Wall Street Journal과 같은 전국 일간지에 광고를 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 중개인들은 “주력은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리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향후 투자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은 주력은행의 도구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그들이 쓰는 용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설득전략 즉 그들의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재무수단을 사용한다는 선전은 동일하다.

III. 국내외 투자사기범죄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최근 10여년간 언론에 노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대표사례를 추출한 다음,[13] 이들을 통계적으로 재분석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한 사례들은 특정기간 내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훑어본 후 연구 대상인 각종 투자사기방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사건이 충실히 기술되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사실상 전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출하였다[14]. 즉

12) 프라임은행의 운용특성은 과도한 배당 보장, 허구적인 재정 도구(수단), 극단적인 보안, 배타적인 기회, 과도한 복잡성을 강조한다.

13)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상에 보도된 거의 모든 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14) 한 사건이 여러 개의 기사로 보도된 경우는 한 사건으로 통합하였음은 물론이다. 기사가 여러 개일 경우엔 각 기사들이 상호 보충적인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정보부합도와 정보충실성이 표집의 핵심기준인 셈이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 112건의 사례를 통해 모든 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실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요 유형들의 발생 실태의 대략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투자사기범죄의 유형별 분포

앞서 제시했던 투자사기범죄의 유형들이 조사된 자료에서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지를 <표 1>에 요약하였다. 앞부분에서는 총 5가지의 주요 투자사기 유형을 분류했었는데, <표 1>에는 이에 덧붙여 개인투자사기와 역외 및 해외투자가 첨가되었다. 이 범주들은 앞서 분류했던 유형에 딱히 부합되지 않는 잔여적 범주로서의 성격이 없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12개의 분석된 사례 가운데 폰지사기(Ponzi Scheme)가 50건(4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기타의 개인투자사기로 24건(21.4%), 나이지리아 선불사기 13건(11.6%)의 순이었으며 펌프앤덤프(Pump and Dump)와 프라임은행은 각각 9건(8.0%)이었다. 그 외에도 기획부동산사기가 6건(5.4%)이 있었고 역외 및 해외투자는 1건으로 나타났다. 투자사기의 유형 중에 폰지책략이 많은 것은 고수익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분석대상 사례들의 유형별(대분류) 빈도

투자사기의 유형(대분류)	빈도	퍼센트
폰지사기	50	44.6
기타(개인사기)	24	21.4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	13	11.6
펌프 앤 덤프	9	8.0
프라임 은행	9	8.0
기획부동산투자사기	6	5.4
역외 및 해외투자	1	0.9
합계	112	100.0

기사를 종합하였다.

아래 <표 2>는 폰지, 펌프앤덤프, 역외 및 해외투자, 프라임은행, 개인투자사기, 나이지리아 선급금사기, 기획부동산의 유형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우선 폰지사기는 다시 금융 다단계, 부동산 다단계 및 수익사업 다단계 세 가지 유형[15]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이 세 가지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금융다단계로 전체 50건의 사건 중 21건이 해당되었고 다음이 수익사업다단계로 19건이었으며 부동산 다단계 10건 순이었다. 금융다단계 피해의 비율이 부동산투자나 수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보다 높은 이유는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윤창출이 힘들어지고 저금리시대와 맞물려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을 시중 금리 이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손쉽게 큰돈을 벌수 있다고 황당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에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다단계의 범죄수법은 유사수신행위[16]를 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2〉 투자사기의 세부유형 분류

	세부유형	빈도	퍼센트	유형별 퍼센트
폰지	금융다단계(주식/펀드/외환/선물/채권/사채)	21	18.8	42.0
	부동산다단계(아파트/주택/토지/경매물)	10	8.9	20.0
	수익사업다단계 (카지노/녹용/바이오/연료/회사/오리사육/벌목사업/벤처회사/영화제작/건강보조식품/교통범칙금대납사업/바이오연료사업)	19	17.0	38.0
	소계	50	44.6	100.0
펌프덤프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 부풀리기	5	4.5	55.6
	스펨메일 등으로 고가의 주식올리기	1	.9	11.1
	회사정보허위공시	3	2.7	33.3
	소계	9	8.0	100.0

15) 금융다단계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국채, 사채), 펀드, 외환 및 선물과 관련된 사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다단계는 아파트나 주택, 토지와 관련된 사기를 일컬으며, 수익사업 다단계에는 요식업, 건강식품, 벤처회사 등 각종 사업투자와 관련된 사기를 말한다.

16) 앞서 정의한 유사수신 행위를 좀더 간단히 정의하면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즉,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및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	1	0.9	100.0
	소계	1	0.9	100.0
프라임은행	매매가격부풀리기	5	4.5	55.6
	부당대출(은행직원과공모)	2	1.8	22.2
	연금대출	2	1.8	22.2
	소계	9	8.0	100.0
개인투자 사기	부동산투자 (토지/주택/광산/학교/회사)	10	8.9	41.7
	수익사업 (공연/골프장/영화/금괴/광고사업/환전/골프장분양권/영화사업/비상장주식)	13	11.6	54.2
	기타(이민투자등)	1	.9	4.2
	소계	24	21.4	100.0
나이지리아 선불사기	비자금/유산/휴먼예금이체	5	4.5	38.5
	염색미화이용	1	.9	7.7
	거액외국로또복권당첨미끼	2	1.8	15.4
	금, 구리수출사기	2	1.8	15.4
	외국은행 자금의 대출과 투자유치	1	.9	7.7
	입찰수주, 무역거래이용	2	1.8	15.4
	소계	13	11.6	100.0
기획 부동산	산업단지조성	1	.9	16.7
	특성화단지	4	3.6	66.7
	팬션, 전원주택단지	1	.9	16.7
	소계	6	5.4	100.0
전체 합계		112	100.0	

펌프덤프의 세부유형으로는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 부풀리기(작전세력)[17], 스팸메일 등으로 고가의 주식 올리기(스팸메일), 회사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기(허위공시)[18]

17) 작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 루머에 의한 시세조정, 행동(액션)에 의한 시세조정 등이다. 작전세력을 이용하여 주가를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펌프앤덤프 방식이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매도/매수 주문에 관여하여 지속적으로 고가의 매수주문에 내 주가를 올리면 개인투자자들은 호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매수주문에 동참하게 된다. 이때 작전세력들은 주식을 팔아버리고 시장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18) 회사정보허위공시는 소문, 공시, 뉴스 등을 이용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다. 최근 작전세력들은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스펨메일을 보내 주식정보를 흘리거나 의도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을 매수해 허위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주식을 부풀리는 등 계속해서 진화한다.

등이 있었으며 총 9건의 펌프덤프 사례가운데 작전세력이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허위공시 3건, 스팸메일이 1건이었다[19]. 프라임은행의 경우는 모두 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매매가격 부풀리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당대출과 연금대출로 각각 2건이었다. 개인투자사기는 모두 2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수익사업을 가장한 투자사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20] 다음이 부동산투자 10건, 기타 이민투자가 1건이었다.

한편, 70~8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기 시작되어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까지 확산되어 여전히 국제사기 범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나이지리아식 선불사기는 모두 13건이 추출되었고 이 가운데 비자금이나 휴면예금과 같이 일종의 눈먼 돈을 사기 치는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외국로또, 귀금속수출사기 및 무역거래이용사기로 각각 2건이었으며, 염색미화이용사기와 외국자금관련 사기가 각각 1건이었다.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에서는 비자금·거액유산·이체사기가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모두 6건이었는데 이 중 특성화단지에 관련된 사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단지조성과 주택단지(펜션, 전원주택)조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개발업·매매업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중개업의 성격이 강하여 일종의 유사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 영업형태로 볼 수 있다. 대규모 호화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특성화단지, 산업단지조성, 행정도시, 그린벨트 해제, 펜션·전원주택단지 등 개발예정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끝으로, 역외투자 혹은 해외투자와 관련된 사건은 단 1건이 추출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투자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하는 것이었다[21].

---

19) "루보 사건"은 국내의 대표적인 펌프앤덤프의 사례이다. 00그룹 전 부회장 김00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작전세력들이 허위 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피업체 주가를 부풀려 시세차익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20) 그 중에서도 공연투자, 골프장부지투자, 금괴수입투자, 광고사업투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가장한 투자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금원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원 편취, 골프장사업부지에 투자, 유명감독을 내세워 흥행보증을 해 준다며 투자유치, 금괴를 수입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투자권유,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2. 투자사기의 범행수법 분류

앞서 제시했던 투자사기의 각 유형들은 “투자 상품의 종류”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범행수법 개념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투자사기의 범행수법은 크게 “미끼수법”과 “유인수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언론에 드러난 투자사기 사건들의 구체적인 수법들을 정리하여 그 공통성과 차이성을 이념형(ideal type)적으로 추출하여 구성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사기에 있어 미끼수법은 투자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투자 상품이나 금융, 부동산, 수익사업 등 투자처를 허위로 만들어 현혹하는 방법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유인수법은 실제 투자 상품이나 투자처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 거짓된 행위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속이는 행위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후자는 현존하는 실제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고, 전자는 실제로는 존재하는 않는 투자 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를 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표 3>은 이 같은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사기 유형별 범행수법의 분포이다. 우선 전체 표본사례 112건 중에서 74건(66.1%)은 미끼수법을 사용한 경우였고, 38건(33.9%)은 유인수법을 사용한 경우였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에 한정할 때, 미끼수법을 활용하는 투자사기 사건이 유인수법을 활용하는 투자사기 사건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1) 이 유형에는 그 외에도 해외 현지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유출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표 3〉 투자사기 유형별 수법 분류

			범행수법		전체
			미끼수법	유인수법	
사건 유형	폰지	빈도	31	19	50
		(백분율)	(62.0)	(38.0)	(100.0)
	펌프앤덤프	빈도	5	4	9
		(백분율)	(55.6)	(44.4)	(100.0)
	역외및해외투자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프라임은행	빈도	4	5	9
		(백분율)	(44.4)	(55.6)	(100.0)
	기타개인사기	빈도	16	8	24
		(백분율)	(66.7)	(33.3)	(100.0)
	나이지리아식선불사기	빈도	13	0	13
		(백분율)	(100.0)	(0.0)	(100.0)
	기확부동산투자사기	빈도	4	2	6
		(백분율)	(66.7)	(33.3)	(100.0)
전체		빈도	74	38	112
		(백분율)	(66.1)	(33.9)	(100.0)

투자사기 유형별로 범행수법을 교차해서 보았을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유형들에서 미끼수법이 유인수법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프라임은행 투자사기 유형 정도에서만 양자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투자사기에서 미끼수법이 유인수법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합법적 투자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서의 유인수법을 활용하는 것이 관련 전문직에 연루되어 있거나 하기 전에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음 <표 4>에서 투자사기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의 차이를 보면, 전문직에서 유인수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고[22], 나머지 대부분의 직업군에서는 유인수법보다는 미끼수법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무직의 경우에도 유인수법이 더 많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5건 중 3건), 그 경우엔 사례수가 워낙 적어서 실제 모집단에서도 과연 그러한지를 단언하기가 어렵다.

〈표 4〉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범행수법

구분			범행수법		전체
			미끼수법	유인수법	
가해자 직업	전문직	빈도	5	14	19
		(백분율)	(26.3)	(73.7)	(100.0)
	관리직	빈도	33	16	49
		(백분율)	(67.3)	(32.7)	(100.0)
	사무직	빈도	7	2	9
		(백분율)	(77.8)	(22.2)	(100.0)
	판매서비스직	빈도	4	1	5
		(백분율)	(80.0)	(20.0)	(100.0)
	무직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기타	빈도	8	1	9
		(백분율)	(88.9)	(11.1)	(100.0)
전체		빈도	59	37	96
		(백분율)	(61.5)	(38.5)	(100.0)

* χ^2 = 16.192 , p = 0.006 (p<0.01)

본 연구의 표본사례에 속하는 언론보도 구체적 사례들에 의하면, 명문대학을 나와 주식투자 전문가, 펀드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로 대학에 강의를 개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들의 사기수법은 학력을 포장하거나 언론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언론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투자자들은 학력이나 각종 타이틀과 언론보도를 믿고 투자를 하다가 피해를 당하였다.

그 투자자들 중에는 상당한 재력가들 뿐 만 아니라 주부, 자영업자, 회사원 등 골고루 망라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인수법에서는 전문직 혹은 전문적 테크닉을 소유한 투자사기 범죄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투자 상품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미끼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투자자들까지도 속기 쉬울 개연성이 있다.

3.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실태

먼저 투자사기 각 사건 당 피해자수를 보면, 각 사건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수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표 5>는 112건의 투자사기 언론보도 사건 중 피해자수가 확인된 80건의 사건에서의 피해자수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사건 당 피해자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피해자수가 '1백 명 초과 1천 명 이하'의 경우로 전체의 33.8%인 27건이었다. 피해자가 1천 명이 넘는 경우도 도합 14건(17.6%)이었다. 투자사기 사건 하나에 수천 혹은 수만 명에 이르는 많은 피해자들이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5〉 투자사기 사건당 피해자의 수

피해자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명	14	12.5	17.5	17.5
10명 이하	11	9.8	13.8	31.3
100명 이하	14	12.5	17.5	48.8
1,000명 이하	27	24.1	33.8	82.5
10,000명 이하	11	9.8	13.8	96.3
10,000명 이상	3	2.7	3.8	100.0
유효사건	80	71.4	100.0	
결측치	32	28.6		
전체 합계	112	100.0		

다음 <표 6>에서는 <표 5>의 내용을 두 가지 범주로 압축한 다음 투자사기 범죄수법과 사건 당 피해자수를 교차하여 보았다. 앞서 투자사기 범죄수법에 대한 설명에서는 완전한 허구의 투자 상품을 토대로 한 미끼수법에 비해 실존하는 투자 상품을 토대로 실제 내용을 부풀려 사기행각을 벌이는 유인수법이 피해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유인수법이 미끼수법에 비해 비록 그 발생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한 바 있다. 따

라서 <표 6>의 내용은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를 보면, 미끼수법의 경우 피해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가 38.8%(19건), 10명 초과인 경우가 61.2%(30건)이었고, 유인수법의 경우에는 10명 이하가 19.4%(6건), 10명 초과가 80.6%였다. 단순히 이러한 비율 분포만 보자면 유인수법이 미끼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자수가 많다는 판단을 내려 볼 만도 하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해보면, 두 가지 수법에 따른 피해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례수가 워낙 적어서 그렇게 된 점도 있지만[23], 어쨌든 양자 사이에 매우 뚜렷한 차이를 언급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 투자사기 범행수법과 피해자수

구분			범행수법		전체
			미끼수법	유인수법	
피해자수	10명 이하	빈도 (백분율)	19 (38.8)	6 (19.4)	25 (31.3)
	10명 초과	빈도 (백분율)	30 (61.2)	25 (80.6)	55 (68.8)
전체		빈도 (백분율합산)	49 (100.0)	31 (100.0)	80 (100.0)

* χ^2 = 3.333, p = 0.068 (N.S.)

<표 7>은 표본에 나타난 투자사기 사건 당 피해액을 요약한 정보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액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카이자승 검증은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례수가 좀 더 많았다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표 7〉 투자사기 사건당 피해액

피해액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억원이하	9	8.0	9.7	9.7
1십억원이하	20	17.9	21.5	31.2
1백억원이하	31	27.7	33.3	64.5
1천억원이하	24	21.4	25.8	90.3
1조원이하	6	5.4	6.5	96.8
1조원이상	3	2.7	3.2	100.0
유효사건	93	83.0	100.0	
결측치	19	17.0		
전체 합계	112	100.0		

* 피해액은 개인당 피해액의 기준이 아니라 사건당 피해규모임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피해액이 전체의 33.3%(31건)였고,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가 25.8%(24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21.5%(20건)를 차지하였다. 최근의 국내외 투자사기에서는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다수 피해자의 거액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심지어 1조원이상의 피해(1만명 이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산액)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음 <표 8>은 투자사기 범죄수법에 따른 사건 당 피해액에 관한 교차분석표이다. 표를 보면, 미끼수법의 경우 피해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35.6%(21건), 10억원 초과인 경우가 64.4%(38건)이었고, 유인수법의 경우에는 피해액 10억원 이하가 25.8%(8건), 10억원 초과가 74.2%였다. 여기서도 겉보기에는 유인수법의 경우가 미끼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통계적 유의도 검증 결과에서는 둘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24].

24) T테스트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봐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경우엔 사례수가 아주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또한 앞의 <표 6>과 위 <표 8>을 대략 비교해 생각해 볼 경우, 아마도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미끼수법의 경우가 유인수법의 경우보다 약간 많을 수도 있다는 판단까지도 해볼 수 있다.

〈표 8〉 투자사기 범행수법과 사건당 피해액

구분			범행수법		전체
			미끼수법	유인수법	
피해액	10억원 이하	빈도	21	8	29
		(백분율)	(35.6)	(25.8)	(32.2)
	10억원 초과	빈도	38	23	61
		(백분율)	(64.4)	(74.2)	(67.8)
전체		빈도	59	31	90
		(백분율합산)	(100.0)	(100.0)	(100.0)

* χ^2 = .891, p = 0.345 (N.S.)

아무튼 앞의 <표 6>과 위 <표 8>을 통해, 유인수법이 미끼수법에 비해 피해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줄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유인수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수가 더 많아지거나 피해금액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위 국내외의 투자사기에 대하여 실증적인 차원에서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사기에 대한 개념정립을 한 후 유형분류를 통해 다양한 투자사기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양한 투자사기의 실태 가운데 나이지리아의 선급금과 관련한 419코드, 폰지책략, 펌프덤프책략, 집단투자사기(뮤추얼 펀드와 기획부동산), 프라임은행 등의 수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유형분류의 토대 위에서 국내외 투자사기범죄의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하여 보았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사례들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112개의 분석된 사례 가운데 폰지사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타의 개인투자사기, 나이지리아 선급금 사기, 펌프앤덤프와 프라임은행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투자사기의 유형 가운데 폰지책략이 많이 나타난 것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이들 각 투자사기의 사건 당 피해자수나 피해금액은 웬만한 범죄피해에서의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사기의 수법을 크게 나누어 존재하지 않는 허위·가공의 투자 상품을 창출하여 기망하는 미끼수법과 현존하는 투자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왜곡정보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수법으로 나누어 관찰할 경우엔, 미끼수법이 유인수법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러 가지 투자사기의 하위 유형 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한편, 유인수법은 주로 가해자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유인수법은 현존하는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스러운 투자자들까지도 속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두 유형에서의 피해자수나 피해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비록 유인수법의 경우에서 미끼수법의 경우보다 피해자수 및 피해금액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통계적인 검증을 거칠 경우 양자 사이의 차이는 그다지 뚜렷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투자사기 범죄는 대상의 연령, 수입, 학력, 지적 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투자사기 범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 세련된 매너, 친밀한 목소리,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대화술,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능통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서 범행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경제적인 성공이 삶의 최고목표가 되어버린 문화적 풍토에서 작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투자사기의 문제는 최근에 이루어진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이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조직화된 범죄집단까지 개입하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정도로 복잡다단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차 국제수준에서의 투자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자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급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높은 수익률에 대한 약속 등의 과대광고를 함부로 믿지 않는 것이다. 둘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인지하여 사기피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특히 국제투자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근거 없는 판타지를 없애는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금융기관의 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가급적이면 자신이 비교적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잠재적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명심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사기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정부가 할 일 중의 하나는 이와 관련한 홍보 및 상담서비스 기구를 갖추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정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StopFraud.gov와 같은 웹사이트 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사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투자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투자사기에 대한 실태를 주로 최근 언론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부득불 누락되었고, 보도된 자료의 경우에도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기사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사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을 단언하기 힘든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사기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황무지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의 조사자료는 비록 언론보도자료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보도된 언론자료의 거의 전수를 조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자료들이 최소한 투자사기의 기본 유형들에 대한 대략적 윤곽을 제시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사연구 자료분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순래 외(2010),『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서울.

소비자보호원(2006), “유사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원(2006),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은 이렇게”.

KORTRA(2005), “아프리카 무역사기 Trend 변화 및 시사점“.

양승돈(2009),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문연(2009), “보험회사의 헤지펀드투자 개선방안 : Madoff의 폰지금융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통권 제484호, 33-49.

권종호(2001), “사이버증권거래상의 불공정거래”,『증권법연구』, 제2권 제2호, 1-32.

Adogame, Afe. 2009. The 419 Code as Business Unusual: Youth and the Unfolding of the Advance Fee Fraud Online Disclosure,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7*. 551-573

Ames, B. 2007. *Online Spending Tops US$100 Billion, Computer-world.com.au* 05 January

Bandura, A. 1999. Social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21-41

Bernardo Obando-Rojas, Ian Welsh, Michael Bloor, Tony Lane, Vidu Badigannavar and Michael Maguire. 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fraud in a globalised industry: the case of seafarers’ certifications, *The Editorial Board of The Sociological Review 2004*. Published by Blackwell Publishing Ltd.,9600 Garsington Road, Oxford OX4 2DQ, UK and 350 Main Street, Malden, 02148, USA.

Findlay. M. 1999. *The Globalization of Crimne: Understanding transtional Relationships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ntz, J. F., Reinsel, D., Chute, C., Schlichting, W., McArthur, J., Minton,

S., et al.(2007), The expanding digital universe, *IDC white paper* March

Haydee I. Alfonso. 2000. Mortgage Fraud Prevention Program: Volunteer Legal Services Program of the Bar Association of San Francisco,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12(2)

Hazel Croall. 2009. White Collar Crime, Consumers and Victimizaiton, *Crime, Law and Social Change* 51: 127-146

Ken Evola and Nicole O'Grady. 2009. As fraud schemes proliferate . are you the next investor to crash and burn? *JOURNAL OF INVESTMENT COMPLIANCE* VOL. 10 NO. 2 2009, pp. 14-17, Q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Kim-Kwang Raymond Choo and Russel G Smith. 2008. Criminal Exploitation of Online Systems by Organised Crime Groups, *Asian Criminology* 3:37-59

Lyman, P., and Varian, H.R. 2003. *How much information 2003? http://www.sims.berkeley.edu/how-much-info-2003*.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 672-682.

Natasha Tusikov, A. 2008. Mortgage fraud and organized crime in Canada: strategic intelligence brief, *Trends in Organized Crime* 11:301.308.

Stephen Greenspan. 2009. Fooled by Ponzi, *Skeptic*; 14, 4; Research Library

Susan B. Anders. 2010. Website of the Month: StopFraud.com, *Technology: What to bookmark*, The CPA Journal.

Ve´ronique Pujas. 2003. 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a European policy to fight against economic and financial fraud?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5 October 2003: 778.797

【검색】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www.okmedia.or.kr), 2010년 12월 10일 검색.

http://www.spamlaws.com/internet-fraud-stats.html

http://www.nasaa.org/Investor_Education/Investor_Alerts___Tips/290.cfm

http://www.investopedia.com/university/scams/scams1.asp

An Empirical Study on the Types of the Investment Fraud

Cheong Sun Park*·Hwang Ji Tae**·Yang Seung Don***

In the era of information that IT technology has developed remarkably, crimes have been advanced and developed in various ways. The fraud that one makes effort to earn economic advantages by deceiving tends to be internationalized and globalized. Foreigners' crime in Korea is increasing and the Koreans' suffering from losses and damages by international fraud is also increasing. In particular, investment fraud that deprives someone of money and properties by deceiving is drawing attention **from**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y,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have perceived the seriousness of investment fraud in and out of Korea so that they started to take various kinds of measures to alleviate the risks and impacts in vain. The current measures turned out to be ineffective and invalid. The investment fraud has increased adroitly throughout the world so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individuals, enterprises and even the governments to judge the truth of the transaction.

As such, investment fraud in and out of Korea is increasing in various and complicated way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and types of transactions. A study on types and measures of investment fraud in and out of Korea can not only expand the capacity of criminology in terms of theory and methodology, but also prevent citizens from suffering from losses and damages by frau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methods and measures of investment fraud in and out of Korea disclosed to the public such as Nigerian ad-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ofesso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Research Assistance Room Researcher

vance payment fraud, Ponzi scheme, pump-and-dump, collective action fraud, overseas investment fraud, Prime Bank fraud and other types of investment fraud.

Everyone can be a victim of fraud regardless of age, incom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telligence. In particular, swindlers often have a special knowledge on specific topic, good manner, attractive voice, persistent and persuasive speech, and effective response to crisis, all of which is utilized to easily deceive the target of crime. Nowadays, in the cultural climate where economic success has become the highest goal of the life, the one who wants to earn money with small amount of investment cannot be blamed. As Nigerian AFF shows, so many people might want to earn money even in an irrational and abnormal way when the government cannot manage the economic crisis properly, leaders are corrupt and most of the people with economic desire cannot find out a proper target of investment. The moral consciousness not only in the political structure but also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a socie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e investment fraud cannot be limited to one country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the involvement of organized crime groups working at the global level.

To take action against investment fraud at the international level, exact diagnosis and measures at various kinds of levels should be taken based 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take special measures and make best effort to let citizens invest safely and manage the good economic lives.

❖ Key Words : investment fraud, financial fraud, economic crime, Ponzi Scheme, pump-and-dump

투고일 : 12월 9일 / 심사(수정)일 : 12월 21일 / 게재확정일 : 12월 21일